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43

발의연월일: 2021. 4. 21.

발 의 자:기동민·강훈식·김병기

김영배 · 김원이 · 노웅래

도종환・윤준병・이규민

이정문 · 임종성 · 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 여,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 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 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당시의 기준에 따른 상이 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 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제27조

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
	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
	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
	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
	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u>상이연금을 지급한다.</u>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
	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
	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
	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
	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